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호	295
-------------	-----

제출년월일 94. 9.

제출자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정부방침에 따라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과정업무의 분리 시행을 위한 관계규정 정비 및 타공과금 업무대행 관계규정 보완

□ 주요골자

- 현행 통합공과금 제도의 수도요금 대행 과정규정을 삭제 (안 제31조, 안 제34조)
- 타공과금 (하수도요금, 폐기물수집수수료) 업무의 대행에 따른 관계규정 보완 (안 제43조의2)

□ 기타사항

- 관계법령 : 수도법 제23조
-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상수도업무 추진지침 (내부부)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중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를 '말일로 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4조 제2항중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를 '타공과금을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에'로 하고, 동조 제3항의 '통합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3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1,000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겸침등의 위탁 및 대행)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타회계 공과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 (납기의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은 <u>10일, 20일, 말일로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 한다.</u>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p> <p>②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이 통합공과금 고지서로 요금납부를 원할 경우 관리기간 경과후 3개월까지 수납할 수 있다.</p> <p>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31조 (납기의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 납으로하고, 납부마감은 <u>말일로하여 징수한다.</u>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삭제)</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34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p> <p>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4조 (납부고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타공과금을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에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p> <p>③ 납부고지서.....</p>

신.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u>1,000만원 이상</u>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타공과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1억 원.....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제1항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